


보 도 자 료			
	보도일시	<b>배포 후 즉시</b>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	조현수 과장 / 조응찬 사무관 044-201-6750 / 6762
		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	김수진 센터장 / 김성미 연구관 032-560-8401 / 8404
		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 지원센터	이동욱 센터장 / 이경희 연구원 02-2284-1430 / 1833-9085(31)
배포일시	2021. 1. 29. / 총 4매		

##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

- ◇ 장해등급 산정 방법,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 수정 등을 의결
- ◇ 공정하고 신속하게 개별심사 본격 추진

□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'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(위원장 환경부 차관)'를 개최하여 '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' 개정(2020년 9월 25일 시행)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.

□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\*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·의결했다.

\*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,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



○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\*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.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,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.

\*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(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)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, 다양한 건강피해(후유증 포함)의 고려를 위해 '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(2016)'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

-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(2020년 10월 28일)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·의결했다.
  -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‘고도피해’ 이상으로 하고,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·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.
  -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‘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([www.healthrelief.or.kr](http://www.healthrelief.or.kr))’을 통해 공개된다.
- 아울러,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. 개별심사 대상은 총 5,689명\*(‘20.12.31 기준)이며,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.
  - \*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,805명,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,884명임,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있음
  - 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(병원)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,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.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도 심사한다.
  -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, 유선통화,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또한,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,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.
  - 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, 천식,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.

-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,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·발간할 예정이며,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.
-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“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”라며, “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가슴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. 끝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응찬 사무관(☎ 044-201-6762), 국립환경과학원 김성미 연구관(☎ 032-560-8404),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경희 연구원(☎ 1833-9085(31)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

□ 신청·접수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생존	사망	비고
계	7,205	5,585	1,620	- 철회자 포함(197명)
1차 (‘11.11.11~‘13.6.30)	361	247	114	판정완료
2차 (‘14.4.11~‘14.10.10)	169	120	49	판정완료
3차 (‘15.2.6~‘15.12.31)	752	658	94	판정완료 철회자 포함(83명)
4차 (‘16.4.25~‘20.9.24)	5,598	4,284	1,314	판정중 철회자 포함(114명)
5차 (‘20.9.25~)	325	276	49	신청·판정중

※ 기준일 시점의 생존·사망 수치 반영하였으며, 기(既) 판정완료자도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 수행 중

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

(단위 : 명, 억원)

기준시점 (누적)	신청자	총 지원대상*	피해자	진찰·검사비 지원	긴급의료 지원	지원액
’21.1.29	7,205	4,160	4,114	40	48	826

\* 중복자 42명 제외

□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분	계	구제급여								기타		
		요양 급여	요양 수당	장의비	간병비	장해 급여	특별유족 조위금	특별 장의비	구제급여 조정금	추가지원 (배상차액)	진찰· 검사비	긴급의료 지원
금액	82,639	12,218	9,510	332	2,041	0	46,995	1,794	2,497	6,830	10	412
수급자수	2,417	1,617	304	137	59	0	706	706	40	31	40	35

\* 2,417명(중복 42명 제외) = 구제급여 수급자 2,353명(중복제외) + 기타 106명